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서식]　　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사물주소판 (재)교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4일

신청인 (대표자)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	전자우편주소	팩스번호
	주소		

신청내용	행정구역		
	도로명	신청사유	[ ] 훼손 [ ] 잃어버림 [ ] 그 밖의 사유
	건물번호		
	사물번호		
	※ 사물주소판의 (재)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		

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·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(재)교부를 신청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

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 데 동의합니다.

① 문자 메시지 [ ]　② 전자우편 [ ]　③ 팩스 [ ]

신청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결 재	→	사물주소판 교부	→	사물주소판 설치
신청인		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(도로명주소 담당부서)						신청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